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50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김교홍 · 서영석 · 문진석
윤준병 · 이훈기 · 박용갑
한병도 · 정일영 · 김주영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⑥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외국인 수급권자”라 한다)에게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이 법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피부양가족(해당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 가족에게도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속 지급받는 외국인

수급권자 중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제52조제1항 각 호에 새롭게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 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u> <u>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u> <u>나. 가목에 따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것</u> <u>2.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u> <u>⑥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u>
<u><신 설></u>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외국인 수급권자”라 한다)에게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이 법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피부양가족(해당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
- 나. 가목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

⑤ (생략)	자 및 피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